

의안번호	2202648
의 퇴 인	이언주의원
회 답 일	2024. 08. 26.
추계번호	24A2677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2억 3,000만원, 2029년 3,0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3억 5,000만원(연평균 7,0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임
 - 이에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200	—	—	—	—	200	40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안 제7조)	30	30	30	30	30	150	30
합 계	230	30	30	30	30	350	70

주: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5항)	의무규정
2	안 제7조(반도체경쟁력)	○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과 관련된 정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강화특별위원회)	부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제1항)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제2항) ○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됨(제3항)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업계·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정책과 관련한 특정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음(제4항) ○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6항)	
3	안 제8조(반도체산업을 위한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	○ 정부는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에 필요한 설비가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4	안 제9조(반도체 클러스터의 지정 등)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제조·공급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음. 이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¹⁾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중복하여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음(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인프라 조성 및 운영, 생산시설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금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제2항) ○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재정 지원 및 특례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안 제11조(반도체 클러스터 육성시책)	○ 정부는 반도체클러스터의 혁신적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에 관한 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함(제1항) ○ 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 1.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 3. 반도체클러스터 입주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4. 반도체클러스터의 체계적 개발 및 운영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정부는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입지, 세제, 재정, 행정 등에 관한 지원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5	안 제12조(반도체 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 설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반시설을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시행자의 운영 등 일정 및 계획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함. 이 경우 산업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함 － 1. 전력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2. 용수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3. 폐수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4.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6	안 제13조(반도체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하여 반도체 제조시설 신설, 확대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7	안 제14조(융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이 반도체산업 연구개발 및 사업화,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장비(중고품을 포함한다)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음(제1항) ○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대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자금을 융자받은 기업이 해당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제3항)	
8	안 제16조(반도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의 공급망 위기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반도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9	안 제17조(반도체산업 공급망센터의 지정 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산업 공급망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반도체산업 공급망센터(이하 “공급망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함(제1항)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 2.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갖출 것 ○ 공급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제2항) － 1. 반도체산업 공급망 정보 수집·분석 － 2. 반도체산업 공급망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3. 반도체 공급망 관련 국내외 정책·제도·연구개발 동향 조사 등에 대한 정책지원 － 4. 반도체 기업의 공급망 관련 정보제공 및 경영 등에 관한 자문 － 5. 그 밖에 반도체의 공급망 안정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망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관 운영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제3항) ○ 그 밖에 공급망센터의 운영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6항)	재량규정
10	안 제19조(반도체산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 정부는 반도체 기술혁신 및 지속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도체산업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제1항) ○ 반도체산업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음(제3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 1. 반도체산업을 위한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 - 2. 반도체클러스터의 생산시설 구축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 3. 반도체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 설치 - 4.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시책 실행을 위한 사업 - 5. 반도체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 6. 반도체산업 인력의 양성 및 확보를 위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치·운영 - 7. 반도체 혁신성장 전략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 8. 반도체산업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9.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 10.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 11.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1	안 제20조(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을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1항) ○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실시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2항)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이라 한다)이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을 말한다.
2. “국가첨단전략산업”(이하 “전략산업”이라 한다)이란 전략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이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란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이하 “전략산업등”이라 한다) 관련 교육시설·연구시설 및 산업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4. “연대협력모델”이란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둘 이상의 기업, 기관 또는 단체가 시장 활성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구축한 협력체계를 말한다.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	—
2	안 제7조(반도체경쟁력 강화특별위원회)	○	—
3	안 제8조(반도체산업을 위한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	×	○ 안 제8조제2항은 반도체산업에 필요한 설비가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의 대상 및 규모, 기준 등을 예측할 수 없어 현시점에서는 추계에 필요한 사항을 알 수 없음
4	안 제9조(반도체 클러스터의 지정 등)	×	○ 관련 현행 사업 존재 ([참고자료] 참조) ○ 다만, 제정안 시행에 따라 사업 규모가 확대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사업의 확대 여부 및 확대 규모의 추계에 필요한 사항을 알 수 없음
	안 제11조(반도체 클러스터 육성시책)		
5	안 제12조(반도체 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 설치)	×	
6	안 제13조(반도체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	○ 안 제13조는 반도체 제조시설 신설, 확대 또는 이전하는 경우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 감면의 대상 및 규모, 기준 등을 예측할 수 없어 현시점에서는 추계에 필요한 사항을 알 수 없음

7	안 제14조(용자)	×	○ 안 제14조는 반도체산업 연구개발 및 사업화,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장비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자금 용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자금의 용자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용자의 대상 및 규모, 기준 등을 예측할 수 없어 현시점에서는 추계에 필요한 사항을 알 수 없음
8	안 제16조(반도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	○ 안 제16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반도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 기준 및 운영방식 등을 예측할 수 없어 현시점에서는 추계에 필요한 사항을 알 수 없음
9	안 제17조(반도체산업 공급망센터의 지정 등)	×	○ 안 제17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반도체산업 공급망센터의 기관 운영 및 안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출연 및 보조를 규정하고 있으나, 공급망센터의 운영에 관한 기준·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반도체산업 공급망센터 사업의 대상 및 규모, 기준 등을 예측할 수 없어 현시점에서는 추계에 필요한 사항을 알 수 없음
10	안 제19조(반도체산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	○ 안 제19조제1항은 반도체산업특별회계의 조성을 규정하면서 안 제19조제3항은 반도체산업특별회계의 세출을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19조제3항제11호는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도체산업특별회계의 세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추가되는 특별회계 세출의 규모, 기준 등을 예측할 수 없어 현시점에서는 추계에 필요한 사항을 알 수 없음
11	안 제20조(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	○ 관련 현행 사업 존재 ([참고자료] 참조) ○ 다만, 제정안 시행에 따라 사업 규모가 확대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사업의 확대 여부 및 확대 규모의 추계에 필요한 사항을 알 수 없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 제1조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안 제5조)

- 비용추계 대상은 안 제5조에 따른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비용”으로 하며, 기본계획 수립 비용은 연구용역비로 함
 - 산업통상자원부 제출 유사 연구용역 사례를 참조하여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비용을 추계함
 - 유사 연구용역 사례의 연구용역비 평균인 1억 9,500만원을 참조하고 5년 주기를 고려하여 법 시행 첫해인 2025년에 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표 1]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유사한 연구용역 사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례	실시년도	예산(백만원)
제3차 무역구제진흥 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산업통상자원부)	2020	80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환경부)	2020	460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추진전략(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7	90
제4차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6	150
평 균		195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 제정안에 따라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표 2]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200	-	-	-	-	200	4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반도체 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안 제7조)

- 비용추계 대상은 “반도체 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에 따른 비용”으로 하며, 위원회 설치 비용은 민간위원 회의참석수당 금액으로 함
 - 민간위원 수와 회의 개최 횟수를 곱한 값에 민간위원 1인당 회의참석수당 단가를 적용하여 추계함
 - 민간위원의 수는 25명, 회의 개최 횟수는 연 4회로 가정
 - 안 제7조제2항은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인 대통령과 부위원장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는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제3항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2호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업계·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위원의 정수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3명인 것으로 간주하여 민간위원의 수는 25명으로 가정함
 - 민간위원 1인당 회의참석수당 단가는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참조하여 300,000원²⁾으로 가정
 - 1일당 최대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회의 운영비는 회의자료 배부, 인쇄물 제작 등에 관한 비용으로 위원 1인당 5만원으로 가정함

2)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만원을 지급하되,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만원을 추가 편성할 수 있으며 여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검토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본 추계에서는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 1회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

- 제정안에 따라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1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표 3]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안 제7조)	30	30	30	30	30	150	3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신헌태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신헌태	02-6788-4653	heontshin@assembly.go.kr

[참고자료]

반도체산업 관련 세부사업 현황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코드)	재원	사업 내용	2024예산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연대협력지원(R&D) (3171-419)	일반회계	○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를 구성하는 첨단전략산업 관련 전·후방산업 기술개발 및 실증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지원	4,500
구미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지원 (3171-433)	일반회계	○ 구미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내 구미 국가산단 1~3공단 간 연결성 강화 위한 교량 신설 지원	20,000
반도체인프라활용 현장인력양성 (3161-319)	일반회계	○ 대학 내 반도체 인프라를 활용한 반도체 분야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및 취준생 교육을 통한 반도체 현장인력 양성	5,013
시스템반도체설계 실무인력양성 (3161-323)	일반회계	○ 시스템반도체 설계교육센터 운영 및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을 통한 반도체 설계 실무인력 양성	3,700
반도체아카데미구축 (3161-329)	일반회계	○ 반도체 산업계 수요의 맞춤형 현장 인력 양성을 위한 산업계 주도의 인력양성 센터인 ‘반도체 아카데미’ 구축	4,260
민관공동투자반도체고급 인력양성(R&D) (3161-416)	일반회계	○ 대학·연구기관 석·박사 인력을 통해 기업 수요형 R&D 과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초격차 핵심기술개발 및 석박사 고급 인력양성	11,974
PIM인공지능반도체 핵심기술개발(R&D) (3561-302)	일반회계	○ DRAM 제조 공정 기술 고도화, PIM용 차세대 상용메모리(MRAM, PRAM) 아키텍처 및 공정·소재·장비 상용화 기술개발을 통한 PIM용 메모리 기술 고도화	18,360
시장선도를위한 한국주도형 K-Sensor 기술개발(R&D) (3561-305)	일반회계	○ 주력산업의 데이터 수집 및 처리에 필요 한 핵심 센서 기술개발과 센서 산업 생태계 구축 등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30,410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 (설계,제조)(R&D) (3561-307)	일반회계	○ 산업체·학교·연구소의 4차 산업혁명시대 에 부합하는 차세대 반도체 설계 핵심기 술 R&D 지원을 통해 新시장 선점 및 제조기반기술 확보로 국산화율 제고	62,907

세부사업 (코드)	재원	사업 내용	2024예산
시스템반도체핵심IP개발 (R&D) (3561-308)	일반회계	○ 시스템반도체 핵심IP(반도체 설계) 확보를 통한 국내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와 팹리스 기업의 가격경쟁력 제고로 파운드리-팹리스 선순환 생태계 구축	1,122
전략제품창출글로벌K-팹리스 육성기술개발(R&D) (3561-311)	일반회계	○ 시스템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 및 지속 가능한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 팹리스 기업 육성	3,328
화합물소재기반 차세대전력반도체기술개발 (R&D) (3561-317)	일반회계	○ 전력시스템 수요에 대응 가능한 밸류체인형 상용화 기술·미래 선도형 기술·핵심 제조기술 개발을 산·학·연에 지원하여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전력 효율 향상에 기여	7,393
신시장창출을위한수요연계 시스템반도체기술개발 (R&D) (3561-418)	일반회계	○ 수요 연계형 과제 추진체계 구축과 5代 신산업분야(자동차, 에너지, 도심항공, 헬스케어, AI스마트홈) 품목선정·지원을 통한 新산업 분야의 기술경쟁력 확보 및 차세대 반도체 산업 지원 강화	10,500
화합물전력반도체고도화 기술개발(R&D) (3561-422)	일반회계	○ 전력시스템 수요에 대응 가능한 밸류체인형 상용화 기술·미래 선도형 기술·핵심 제조기술 개발을 산·학·연에 지원하여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전력 효율 향상에 기여	14,000
반도체디스플레이 온실가스감축공정기술개발 (R&D) (6431-534)	기후기금	○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온실가스의 배출 최소화를 위한 저GWP 신규물질 개발 및 실증연구 지원	2,594
시스템반도체기업 성장환경조성 (3171-304)	일반회계	○ 팹리스기업 창업초기 인프라지원, 설계환경지원, 시제품(MPW) 제작지원을 통한 설계 인프라 제공	9,625
시스템반도체 IPBank 플랫폼 구축 (3171-315)	일반회계	○ 단기수요대응, 핵심IP확보, IP선순환 생태계시스템구축을 통한 반도체 국가전략자산 확보 및 플랫폼화	5,482
시스템반도체 수요연계 온라인플랫폼지원사업 (3171-372)	일반회계	○ 수요기업의 니즈와 공급기업의 기술을 온라인 플랫폼(COMPASS)에 등재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매칭된 기업의 시제품 제작비용 지원	8,050

세부사업 (코드)	재원	사업 내용	2024예산
반도체소모품실증센터구축 (3171-424)	일반회계	○ 해외 선도기업과의 기술격차 완화 및 국내 공급망 강화를 위해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를 구축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양산단계에서의 실증 지원체계 구축	2,000
시스템반도체검증지원센터 구축 (3171-432)	일반회계	○ 시스템반도체 상용화 지원 및 생태계 강화를 위해 팹리스, IP 기업의 반도체 설계와 성능 검증을 위한 기술 및 인력 지원	3,000
지능형반도체개발실증지원 (3171-436)	일반회계	○ 지능형 반도체 설계·생산 경쟁력 및 협력 생태계 강화를 위해 설계툴 및 시제품 제작·실증 지원, 인력양성 등 팹리스 전주기 성장 거점 지원	3,390
반도체소재·부품시험평가센터 구축 (3171-435)	일반회계	○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분석 인프라 및 센터 구축을 통해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5,000
미래차전장부품시스템반도체 신뢰성검증센터구축 (3171-434)	일반회계	○ 미래자동차 전환에 따른 시스템반도체 및 신규부품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차량용 반도체와 전장부품을 통합 지원할 One-Stop 검증센터 구축	4,300

주: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소관 세부사업 기준